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법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2조제1항)

- 위원장 포함 5인 → 7인으로 민간위원 2명 증원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 :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 : 구미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또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 ② 제1항에 따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구미시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1. 6. 23.]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2명이 증원(3명→5명)됨에 따라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소요가 예상됨(안 제2조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내 용	산 출 내 역		증 가 액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3명×2회 = 420,000원	70,000원×5명×2회 = 700,000원	280,000원

4. 작성자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서기 장 경 연 (054-480-6074)

소 관 부 서		감사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권 영 복
	담 당	정 의 재
	담 당 자	장 경 연 (480-6074)